대법원 2023도13648 사기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 1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의 대표로서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정대협과 그 부설 박물관의 업무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① 피고인들이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1이 모집등록 없이 각종 후원금, 경비 등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③ 피고인 1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고, ④ 피고인 1이 치매 증상이 악화된 피해자로 하여금 기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⑤ 피고인들이 쉼터를 고가에 매입하여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⑥ 피고인들이 쉼터를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일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위반,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3] 위반,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364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이하 '정대협'
2) 이하 '보조금법'
3) 이하 '기부금품법'

▣ 피고인 1 ⇒ 정대협의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및 정의기억연대 등의 업무 전반 총괄

▣ 피고인 2 ⇒ 정대협과 그 부설 박물관의 업무 실무 담당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 A가 정대협 부설 박물관에서 상근 학예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은 물론 실제 학예사로 근무한 바 없는데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박물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3. 3.경 ~ 2020. 5.경 총 10개 사업에 걸쳐 합계 1억 5,86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

● 여성가족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정대협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도 허위의 신청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 1.경 ~ 2020. 4.경 총 7개 사업에 걸쳐 합계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

●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허위로 발급받은 박물관 등록증과 A가 학예사로 근무한다는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2015. 11. 16. ~ 2020. 4.경 총 8개 사업에 걸쳐 합계 1억 4,37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

● 기부금품법 위반

■ 관할 등록청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및 정의기억연대 관련 각종 후원금, 경비 등 기부금품을 모집함

● 업무상배임

■ 2013. 6.경 기부금 사업 수행을 위한 안성쉼터를 위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업목적의 적합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안성쉼터에서 2014. 1. 18.경 ~ 2019. 7.경 총 53회에 걸쳐 합계 902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을 함

▣ **피고인 1 단독 범행**

● **기부금품법 위반**

■ 관할 등록청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김○동의 희망' 계좌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각종 후원금, 김○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모집함

● **업무상횡령**

■ 피고인 등 개인 계좌, 정대협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정대협 소유 자금을 2011. 1. 25.경 ~ 2020. 3. 20.경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00,371,00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 **준사기**

■ 치매 증상이 악화된 위안부 피해자의 인지 및 판단능력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의기억재단 등에 피해자의 자금을 기부하도록 하여 2017. 11. 23.경 ~ 2020. 1. 31.경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의기억재단 등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피고인 1 일부 유죄

▣ 피고인 1

●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 유죄[벌금 1,500만 원]

● 나머지 모두 무죄

▣ 피고인 2

● 전부 무죄

나. 원심 ➠ 피고인들 일부 유죄

▣ 피고인 1

● 일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나머지 이유 무죄 또는 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

▣ 피고인 2

● 일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유죄[벌금 2,000만 원]

● 나머지 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

▣ 피고인들 및 검사 모두 상고

다. 원심의 주요 판단 요지

▣ 유죄 부분

● **피고인들의 여성가족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 정대협이 기존 직원의 계좌에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기부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조금 지급의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로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함

● **피고인 1의 김○동 할머니 장례조의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 시민사회장 장례위원들이 납부한 장례위원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고, 모집 기간이나 방법, 규모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1의 일부 업무상횡령**

■ 피고인 1이 개인명의 또는 정대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정대협 소유 자금 합계 약 7,9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박물관 등록요건으로 학예사 상근이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예사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박물관 등록과 보조금 교부는 취지, 목적, 요건, 효과 등이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박물관 등록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기부금품법 위반 및 피고인 1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원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단체의 소속원으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됨

■ 일부 모금은 피고인들이 그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1의 일부 업무상횡령**

■ 위탁받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의 준사기**

■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 안성쉼터 매매가격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금액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 매입과정에서 정대협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안성쉼터를 이용하여 숙박업 서비스를 계속적·반

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제1심과 원심 판단 요약 표

공소사실		피고인	제1심	원심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피고인들	**무죄**	**무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무죄**	**유죄**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피고인들	**무죄**	**무죄**
기부금품법 위반	각종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	**무죄**	**무죄**
	정의기억재단 설립 목적 '할머니와 손잡기' 모금			
	김○동 할머니 미국원정경비 모금			
	베트남 평화기행 경비모금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관련 모금			
	'김○동의 희망' 후원금 모금	피고인 1	**무죄**	**무죄**
	재일조선학교 마스크 보내기 후원금 모금			
	나비기금 모금			
	김○동 할머니 장례조의금 모금		**무죄**	**유죄**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개인계좌 보관 자금	피고인 1	11,236,810원 **유죄** (나머지 **이유 무죄**)	32,470,599원 **유죄** (나머지 **이유 무죄**)
	정대협 계좌 보관 자금		5,946,950원 **유죄** (나머지 **이유 무죄**)	8,907,450원 **유죄** (나머지 **이유 무죄**)
	손○미 개인계좌 보관 자금		**무죄**	**유죄**
준사기		피고인 1	**무죄**	**무죄**
업무상배임		피고인들	**무죄**	**무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피고인들	**무죄**	**무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업무상배임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1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준사기죄의 성립 여부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무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업무상배임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및 준사기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